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안녕하십니까?
양천 제2선거구
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영민입니다.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들 앞에서
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수행기간이
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
결정하고,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
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

-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가 지연되어
감사에서 적발된 행정오류가 시정되지 않고
위법한 사항이 방치되는 등
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

- 감사결과 확정시기를 상위 법령
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3조)에서 정하고 있는
기준에 따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